



Internet Explorer



뉴스 | 전자신문 | 안내광고 | 한인업소 | 날씨 | 카페 | 라디오 서울 | KTN | NewYork Times

LA | NY | Washington DC | San Francisco | Chicago | Seattle | Atlanta | Texas | Denver | Hawaii | Vancouver | Toronto

The Korea Times is Hiring Probation Journalist / Experienced Journalist Job Opening 2010.10.18 chriskim@koreatimes.com

많이 본 기사
- "네가 땡땡이 치면 엄마아빠
- 코리아타운 도서관 도난·파손 몸살
- 한인 석·박사 "한국 갈래"
- 남가주 또 '빅원'주의보
- 대형 한인 의류업체 파산신청
- 항공·숙박·음식 모두 포함돼 고객
- 시민-영주권 포기하니 '세금 폭탄'
- 신앙 서적 2권 합동 출판기념회
- 소셜 네트워크 (The Social)
- 美 9월중 일자리 9만5천개 감소

뉴스홈 > 종합/사회

0 Like [크게] [작게] [프린트] [이메일]

# 245i 조항 (불법 체류 구제 법안)

입력일자: 2010-10-07 (목)

245i 조항은 불법 이민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한다. 이민 신청서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등이다. 그리고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영주권 신청 기준 날짜로 한다.

둘째,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것은 I?94 혹은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운전면허증,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한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다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됐다면 이민 청원서는 당연히 접수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한다.

반면 이민 청원서가 거절됐다면 거절된 사유가 중요하다. 서류가 거절된 이유가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발생되었다면 청원서는 접수했을 당시 승인될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초청 청원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민법이 바뀌었다든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대어 폐업했다든지 등의 이유라면 서류가 거절되었어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류에 이민 청원자의 자격이 처음부터 부족했었거나 사기로 인하여 거절되었다면 청원서 접수당시 승인될 수 없었다고 이민국은 판단한다.

만약 서류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되었다면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를 다시금 제출해야한다. 이민국은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에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SOLAIR SALES CENTER OPEN MON-SAT 10am-6pm SUN 1pm-6pm Tel: 213-387-9099

라디오 서울 뉴스
- 활주로 침범 건수 늘어나
- 주류사회에 코리아 갈비 알린다
- 초등학교 연간 교육일수, 법적으로
- 우편 투표시 주의사항
- 엘에이 총영사관, 국정 감사 없
- 제1회 한글서예전
- 한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는다
- 젊은이 4명 중 1명꼴로, 폭음
- 흑인여성, 모유수유 더 적게 한다

서버 호스팅 전문 기업 HRN Co. T1 Service at \$349 with free Cisco router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좀 다른 법적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일단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받아드렸다면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접수 시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노동부에서 는 신청서가 접수 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245i 조항은 넓게 적용된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가족초청 청원서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밀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 전 배우자의 이민 서류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됐고 전 배우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와 함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2001년 4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도 온 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이 되었다. 245i 조항이 법이 되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5i 조항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45i 조항이 새롭게 통과 된다면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 AD**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 AD** "한국일보 전자신문 정말 빠르고 편리해요"
- AD**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독자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 AD**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 AD**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푸드 매거진을 온라인으로 쉽게

[홈으로](#) | 
 [회사안내](#) | 
 [게임월드](#) | 
 [한인업소](#) | 
 [구독신청](#) | 
 [배달사고 접수](#) | 
 [Place an AD](#) | 
 [독자의견](#) | 
 [안내광고신청](#) | 
 [광고안내](#) | 
 [라디오서울 생방송](#)



THE KOREA TIMES | **신문한국** 서울경제 | **소년한국일보** hankook1.com

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97-2011 **Kore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